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98

제출연월일 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5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(입간판·현수막· 벽보·전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 - 2.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(입간판·현수막·벽 보·전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한 자
 - 3.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- 4.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2.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(입간판·현수막 • 벽보·전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 - 1의3.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(입간판ㆍ현수

막 • 벽보 • 전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- 제1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(입간판・ 현수막・벽보・전단은 제외 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 - 2.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

 지 아니한 광고물(입간판・현

 수막・벽보・전단은 제외한

 다)을 표시한 자
 - 3.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또
 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
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
 한 자
 - 4.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

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

 을 한 자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

개 정 안

- 제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(입간판・ 현수막・벽보・전단은 제외 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 - 2.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한 광고물(입간판·현 수막·벽보·전단은 제외한 다)을 표시한 자
 - 3.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또
 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
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
 한 자
 - 4.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

아니하고 광고물등(입간판· 현수막·벽보·전단은 제외 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<u>자</u>

- 2.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·전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한 자
- 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u>1의2</u>. · <u>1의3</u>. (생략)

2. ~ 5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 _
 _

1. (현행과 같음)

- 1의2.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(입간판 · 현수막 · 벽보 · 전단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
- 1의3.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(입간판 • 현수막• 벽보•전단은 제 외한다)을 표시한 자
- 1의4.·1의5. (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)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